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 - 34호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, 제20조 및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(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-17호, 2024. 04. 30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24년 8월 30일화학물질안전원장

##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

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 중 【별표】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【별표】 중 고유번호 "2017-1-762"란 및 "2022-1-1095"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, 고유번호 "2024-1-1212"란 다음에 "2024-1-1213"란부터 "2024-1-1222"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.

고유번호	화학물질의 명칭
2017-1-762	리모넨[ <u>Limonene</u> ; 5989-27-5, 138-86-3, <u>5989-54-8</u> 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2-1-1095	(±)-노르니코틴[(±)-Nornicotine; 5746-86-1, <u>494-97-3</u> 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4-1-1213	트리플루오르화 인[Phosphorus trifluoride; 7783-55-3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4-1-1214	클로로포름산 2-프로핀일[2-Propynyl chloroformate; 35718-08-2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
고유번호	화학물질의 명칭
2024-1-1215	1,4-디이소시아나토벤젠 [1,4-Diisocyanatobenzene; 104-49-4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4-1-1216	무수아세트산[Acetic anhydride; 108-24-7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4-1-1217	역화 알루미늄[Aluminium trichloride; 7446-70-0] 및 이를 10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4-1-1218	이산화 알루미늄 나트륨[Aluminium sodium dioxide; 1302-42-7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4-1-1219	1,3-디페닐구아니딘[1,3-Diphenylguanidine; 102-06-7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4-1-1220	디이소프로필아민[N-(1-Methylethyl)-2-propanamine; Diisopropylamine; DIPA; 108-18-9] 및 이를 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4-1-1221	염화 시아누르산[Cyanuric chloride; 108-77-0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4-1-1222	황화 카르보닐[Carbonyl sulfide; 463-58-1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(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)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「화학물질관리법」(이하 "화관법"이라 한다)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1.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: 2025년 7월 1일
- 2.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: 2025년 7월 1일
- 3.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: 2025년 7월 1일
- 4.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: 2027년 1월 1일
- 5.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: 2027년 1월 1일
- 6.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: 2026년 1월 1일
- 7.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: 2029년 1월 1일